

#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09,714,123	27,291,424
일반회계	853,420,611	25,602,618
특별회계	56,293,512	1,688,805
공기업특별회계	34,566,076	1,036,98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47,255	571,41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518,821	465,565
기타특별회계	21,727,436	651,8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28,786	222,86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295,000	68,85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459,179	13,7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18,295	93,549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19,471	24,584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936,000	28,0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19,813	21,594
도시개발특별회계	12,503	375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8,656	560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5,349,633	160,4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70,100	17,10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